

<2022.04.30.>

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
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후보자 설명자료
(기초의원)



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
전라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

1 등록 자격

○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상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초의원 경선후보자로 결정된 자

2 경선지역 및 경선 기탁금

□ 기초의원 경선후보자 및 후보자별 경선거탁금

〈가나다순〉

연번	시군	선거구명	경선인수	기탁금	후보자명
1	전주시	전주시 나	2	1,600,000	이기동, 임병오
2		전주시 마	4	800,000	김동현, 김성식, 박상문, 조훈희
3		전주시 바	4	800,000	이경신, 이대성, 이윤자, 전윤미
4		전주시 사	2	1,600,000	박형배, 정병제
5		전주시 아	5	640,000	김동우, 김호성, 남관우, 박선전, 하대성
6		전주시 자	2	1,600,000	이국, 정형덕
7		전주시 차	2	1,600,000	심종아, 이병하
8		전주시 카	3	1,070,000	김윤권, 박윤정, 최명권
9	군산시	군산시 가	3	1,070,000	김경구, 서동수, 전원
10		군산시 나	4	800,000	서은식, 설경민, 우종삼, 윤요섭
11		군산시 다	4	800,000	김영일, 김형기, 이한세, 한상돈
12		군산시 라	8	400,000	김상영, 김영자, 박경태, 박욱규, 박형준, 송정이, 전기수, 조경수
13		군산시 마	2	1,600,000	박광일, 배형원
14		군산시 바	4	800,000	나종대, 박문기, 신영자, 최창호
15		군산시 사	5	640,000	김경식, 김중신, 노정훈, 지해춘, 한경봉
16		군산시 아	3	1,070,000	김우민, 서동완, 장병훈
17	익산시	익산시 가	5	640,000	박철원, 서미현, 정승오, 최종오, 황두관
18		익산시 나	5	640,000	김진모, 김충영, 박찬민, 장경호, 최병모
19		익산시 다	4	800,000	강경숙, 김재곤, 박종대, 최세진
20		익산시 라	3	1,070,000	신광택, 최영철, 한상욱
21		익산시 바	4	800,000	김경진, 신용, 이충열, 정영미
22	정읍시	정읍시 가	6	540,000	고성환, 배정자, 서정일, 오명제, 이심순, 정금성
23		정읍시 다	3	1,070,000	안길만, 정상철, 황혜숙

24		정읍시 라	4	800,000	김재오, 안창욱, 최일호, 최재기
25		정읍시 마	3	1,070,000	기시재, 류춘환, 이남희
26		정읍시 바	3	1,070,000	김송만, 유명순, 최대준
27		정읍시 사	3	1,070,000	김영수, 이상길, 정상섭
28	남원시	남원시 가	3	1,070,000	김종관, 소태수, 윤지홍
29		남원시 다	5	640,000	김길수, 박문화, 염봉섭, 오동환, 장선화
30		남원시 바	3	1,070,000	강인식, 진영모, 한명숙
31	김제시	김제시 가	5	640,000	강형진, 박두기, 박영민, 송형석, 주상현
32		김제시 나	6	540,000	김형상, 오승경, 이병철, 이봉근, 정형철, 채동수
33		김제시 다	2	1,600,000	김영기, 김영자
34		김제시 라	6	540,000	김미희, 오상민, 임영순, 최성욱, 최승선, 황배연
35		김제시 마	7	460,000	김성배, 김형수, 서백현, 양운엽, 정철승, 정호중, 홍성학
36	완주군	완주군 가	3	1,070,000	김태운, 소병호, 유의식
37		완주군 나	4	800,000	송양권, 유이수, 이주갑, 최등원
38		완주군 다	3	1,070,000	김재천, 성중기, 이성원
39	진안군	진안군 나	4	800,000	김명갑, 김한국, 동창욱, 박관순
40	무주군	무주군 나	6	540,000	문은영, 박찬주, 양화모, 오광석, 이광한, 이내숙
41	장수군	장수군 나	4	800,000	나금례, 문재표, 장정복, 최한주
42	임실군	임실군 다	6	540,000	김동균, 김종규, 라시열, 이명로, 이성재, 최인창
43	순창군	순창군 가	4	800,000	김문소, 송준신, 신정미, 이성용
44		순창군 나	3	1,070,000	오수환, 전계수, 최용수
45		순창군 다	5	640,000	마화룡, 설공금, 손종석, 양인섭, 조정희
46	고창군	고창군 다	4	800,000	김영호, 오세환, 임정호, 정길목
47		고창군 라	3	1,070,000	김삼용, 조규철, 차남준
48	부안군	부안군 가	6	540,000	김형대, 남정수, 박병래, 이강세, 이영훈, 장은아
49		부안군 나	4	800,000	김원진, 오장환, 이용남, 이한신
50		부안군 다	3	1,070,000	김광수, 김동선, 이한수
51		부안군 라	6	540,000	박태수, 이승용, 이현기, 장정중, 최현민, 하운기

3 접수서류

- 경선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. (대표경력 관련 증명서류 포함)
- 공명선거 서약서 1부.
- 경선후보자 ARS투표용 경력 신청서 1부.
- 후보자 대리인 위임장 1부.
- 경전기탁금 납부확인증 1부.

4 경선방법

○ 당원경선 : 권리당원 선거인단 전원(해당 지역)

* 권리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ARS투표

- 강제적 ARS투표 : 1일(5회)
- 자발적 ARS투표 : 1일

※ 관련 규정 : 제12차 당무위원회(22.04.06) 승인 투표방법,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 시행세칙 제18조 내지 제22조

5 선거운동 방법

선거운동		가능 여부	내 용	
홍보물 (공보)		불가	· 현장배포 불가, 우편발송 금지 (※웹자보 및 카드뉴스 형식으로 대체)	
합동연설회 (토론회)		전북도당 주최 토론회 실시하지 않음		
문자 메세지	자동 동보	가능	(정부) 예비후보자	· 총8회 발송가능 (※후보자의 8회 발송에 포함, 정부선관위 신고 사항)
		불가	당내경선 후보자	· 문자 2회 발송으로 대체 ☞ 경선일 D-1일, 경선 당일 (※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인 경선선거인에게만 가능)
	일반	가능	· 중앙당 선관위 등록 후보자 명의 번호 1개에 한해 일반전송(20명 이하)은 횟수 제한 없이 전송 가능	
전자우편 (E-mail, SNS 등)		가능	· 대행업체 위탁을 제외하고 제한 없이 발송 가능	
말, 전화, 휴대전화, 온라인 (홈페이지 등)		가능	· 제한 없이 가능함 ※ 말 : 확성기 또는 옥외집회 일반대중 상대로 불가함 ※ 전화 :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만 가능(음성녹음 불가) ※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·동영상 등 게시 가능	
명함		가능	·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금지장소를 제외하고 제한 없이 가능 *제60조의3, 제2호	

6 ARS투표용 대표경력 허용기준

- 1) 전·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 : 불허 (7회 지선 공관위, 21대 총선 공관위+선관위 적용)
※ 후보자의 인지도 보다 전·현직 대통령의 실명이 조사결과에 영향이 큰 우려
 - 2) 경력 입증이 가능한 경력만 인정 (해당 기관단체의 증명서 발급 기준)
 -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, 급여 수급 경력만 인정 / 경력 2개 합25자 이내 (“(전)”, “(현)” 25자 이내 산입하지 아니함)
 - (※ 직렬 변경에 따라 개별 직함으로서의 경력이 6개월 미만이라도 해당 기관단체에서의 총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원하는 경력을 사용할 수 있음)
 - 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의 경우 경력을 인정함
 - 3) 임의적이거나 임시·한시적인 경력 : 불허
 - 기관 및 단체의 경력증명이 가능하더라도 존속 1년 미만인 기구단체의 경력
 - 존속 1년 이상의 기구 또는 단체의 경우에도 임의단체와 모임은 불허
 - 4)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된 선거기구, 후원단체, 연구단체, 기념사업회 등의 영리·비영리단체의 대표경력 : 불허
 - 다만, 재직증명, 법인등기부상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특정 정치인의 이름은 포함할 수 없고,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 - 5) 기관 및 단체의 명칭은 법적등록 명칭 또는 공식 명칭 사용
 - 청와대 근무경력은 ‘대통령비서실 ○○○’ 으로 통일함
 - 김대중정부, 노무현정부, 문재인정부, 국민의정부, 참여정부, 촛불정부 등 : 불허
 - ○○○선대위, ○○○선거대책위원회, ○○○선대본 등 : 불허
 - ○○○를사랑하는모임 회장, ○사모 카페 운영자, ○사모 지부장 등 : 불허
 - ○○○대통령후보 유세단장, ○○○대통령후보 특보 : 불허
 - ○○○시·도지사, ○○○당대표, ○○○국회의원, ○○○장관 정책특보 등 : 불허
 - 국회의원 보좌관,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: 허용
 - 6) 소속기관단체명과 직함(공식적인 직위)은 함께 사용
 - 경실련 임원 : 불허 → 경실련 사무처장 등
 - 7) 학력, 학위의 경우 학교명과 함께 사용
 - 정치학 박사 : 불허 → ○○대 정치학 박사
 - 8) 출마경력 시 당명, 선거구명을 함께 사용 : 예비후보 불허
 - 종로구의회예비후보, 민주당 후보, 19대국회의원후보 : 불허
 - 더불어민주당 현 국회의원,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,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
- ※ 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, 상대 후보와 합의할 시 특정 경력을 대표경력으로 사용할 수 있음